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안내

자료출처 / 대한민국 관보 제13138호
자료정리 / 출판홍보과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중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령 김 영 삼

1995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홍구

국무위원 노동부장관 진 널

◎ 대통령령 제14,78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중 개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 2”를 “별표 2·별표 2의 2”로 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국무총리행정조정실·내무부·국방부·교육부·문화체육부·농림수산부·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환경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총무처·과학기술처·경찰청·농촌진흥청·산림청·수산청·공업진흥청 및 철도청의 3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에 재직하는 자 각 1인과 기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0인 이내로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8조 제3항중 “2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제11조중 “별표 4 및 별표 5”를 “별표 4·별표 5 및 별표 5의 2”로 한다.

제15조 제1항 제4호중 “기능사 1급”을 “다기능기술자·기능사 1급”으로 하고, 동항 제7호중 “자격종목”을 “자격종목·반영시기”로 한다.

제23조 제1항중 “기술사 및 기능계 기술자격”을 “기술사·기능장·기능사 1급 및 기능사 2급(또는 기능사) 기술자격”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기사 1급 및 기사 2급”을 “기사 1급·기사 2급 및 다기능기술자”로 한다.

제26조 제3항중 “중복과목의 면제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를 “중복과목의 면제는”으로 한다.

제3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 2(의견진술)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의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중 타자란을 삭제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의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능기술자·섬유기계기능사 1급·섬유제도디자인기능사 1급 및 섬유제도디자인기능사 2급 종목의 신설에 관한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의 원편란에 기재된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전기분야만 발췌).

경과조치전	경과조치후
전기설비기능사 1급	전기공사기능사 1급
발전설비기능사 2급	전기공사기능사 2급
변전설비기능사 2급	전기공사기능사 2급
송배전설비기능사 2급	전기공사기능사 2급

제3조(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땅칠에 의한 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4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부칙 제2조 표의 원편란에 기재된 종목의 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표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기술자격 종목의 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폐지되는 기술자격과 같은 등급의 같은 기술분야의 기술자격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기술자격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위촉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제도

신법소개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2]

기능계의 기술분야 및 기술분야별 등급 및 종목(제2조 관련): 전기분야만 발췌

등급 및 종목 기술분야	기능장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또는 기능사: * 표시)	기능사보
전 기	전기기기	전기기기	전기기기	전기기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공사	내선공사
				외선공사
			* 송강기 보수	
			* 철도신호	

[별표 4]

기술계 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제11조 관련): 기사 2급 이하 내용 생략

등급	응 시 자 격
기술사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4년제대학 졸업자 등”이라 한다)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전문대학 졸업자 등”이라 한다)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고등학교(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는 포함한다)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고등학교 졸업자 등”이라 한다)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14년 이상 실무부에 종사한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기사 1급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4년제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 1급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은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부에 종사한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기사 2급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대기능기술자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 기사 2급·대기능기술자 또는 기능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 2급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별표 4의 3]

기능계 다기능기술자 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제5조 관련): 관련분야만 발췌

기술분야	자격종목	검정방법	시험과목
전기	전기다기능기술자	필기시험	1. 디지털전자회로 2. 회로이론 3. 전력전자 4. 전기설비 5. 선기기기
			실기시험 전기관련실무
전자	전자다기능기술자	필기시험	1. 디지털공학 2. 전기자기학 및 회로이론 3. 진자회로 4. 마이크로전자계산기 5. 진자기기
			실기시험 전자관련실무
통신	정보통신설비다기능기술자	필기시험	1. 디지털전자회로 2. 디지털통신이론 3. 정보통신망기기론 4. 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
			실기시험 정보통신실무

[별표 5의 2]

기능계 다기능기술자의 응시자격(제11조 관련)

등급	응시자격
다기능기술자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사 2급·기능사 1급 또는 다기능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 2급(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기술자격 종목별로 다기능기술자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기능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부 령

◎ 노동부령 제 101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95년 10월 16일

노동부장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중 “10분의 7”을 각각 “10분의 5”로 한다.

제2조의 10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별표 4 및 영 별표 5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 과정”이라 함은 별표 1의 3의 기술훈련 과정을 말한다.

제4조 제1항중 “기능장” 다음에 “다기능기술자”를 삽입하고, 동조 제4항 본문중 “과정으로서 기술훈련 과정이”를 “과정을 10분의 7 이상 마친 자로서 그 기술훈련 과정이”로 하며, 동조 제9항 본문중 “· 타자종목”을 삭제하고, 동항 단서중 “· 타자”를 삭제한다.

제5조중 “기능계에 있어서는 별표 4의 2, 서비스계에 있어서는 별표 4의 3과 같다.”를 “기능계(다기능기술자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별표 4의 2, 기능계 다기능기술자에 있어서는 별표 4의 3, 서비스계에 있어서는 별표 4의 4와 같다.”로 한다.

제24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 3(의견진술절차) ① 주무부장관은 영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지정일 10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중 한글타자란 및 영문타자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기재란의 전산응용설계기사 2급의 필기시험란 및 전산응용기공기사 2급의 필기시험란중 “3. CAD · CAM 기초 및 기계제작법”을 각각 “3. 전자계산일반 및 기계제작법”으로 하고, 동란의 전산응용설계기사 2급의 필기시험란 제5호 및 전산응용기공기사 2급의 필기시험란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표의 2. 금속란의 금속기사 1급의 Ⅱ. 제련분야 필기시험란중 “2. 금속열역학”을 “2. 금속재료학”으로 하고, 동표의 13. 정보처리란의 정보처리기사 1급의 필기시험란중 “4. 시스템프로그래밍”을 “4. 운영체제”로, “5. 응용통계학 및 수치해석”을 “5. 전산수학”으로 동란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급의 필기시험란중 “4. 시스템프로그래밍”을 “4. 운영체제”로, 동란의 정보처리기사 2급의 필기시험란중 “4. 어셈블리프로그래밍”을 “4. 시스템분석설계”로, “5. 기초통계”를 “5. 전산수학”으로, 동란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2급의 필기시험란중 “2. 자료구조 및 어셈블리프로그래밍”을 “2. 자료구조 및 시스템 프로그래밍”으로 하며, 동표의 19. 안전관리란의 산업 위생관리기사 1급의 필기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필기시험	1. 산업위생학개론 1.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2. 직업위생측정 및 평가 5. 산업독성학	3. 작업환경관리대체
------	------------------------------	----------------------------	-------------

[별표 4의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3중 타자란을 삭제하여 동표를 별표 4의 4로 하고,

[별표 4의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 기사 1·2급,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기능사), 기능사보란의 제목을 “기사 1·2급, 다기능기술자,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기능사), 기능사보”로 한다.

별표 6중 한글타자란 및 영문타자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7의 기준란의 제4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이 규칙 제2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 서식]·[별지 제14호 서식]·[별지 제15호 서식] 및 [별지 제16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 2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2중 섬유기계기능사 1급·섬유제도디자인기능사 2급의 시험과목 신설에 관한 개정규정 및 별표 4의 3·별표 5·별지 제16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과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중 정보처리기사 1급·정보처리기사 2급의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과 별표 4의 2중 기계가공기능장·금형제작기능장·용접기능장·자동차정비기능장·철도동력차기능장·금속재료기능장·주조기능장·도금기능장·압연기능장·제선기능장·제강기능장·위험물취급기능장·전기기기기능장·전기공사기능장·전자자기기기능장·정보처리기능사 1급 및 정보처리기능사 2급의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이후 시행되는 필기시험부터 적용한다.

③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보수교육종목 및 교육기관(제2조의 2 및 제31조 관련): 관련분야만 발췌

주부부장관	보수교육종목	교 육 기 관
통상산업부장관	일반기계기사 1급	• 생산기술연구원
	일반기계기사 2급	• 대한전기기사협회(일반기계기사 1급 및 일반기계기사 2급 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교육대상자)
	전기공사기사 1급	•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기사 2급	• 대한전기기사협회
노동부장관	전기기사 1급	• 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교육대상자)
	전기기사 2급	• 한국전기공사협회
기능장	기능장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기계가공기능사 1급	

신법소개

주부부장관	보수교육종목	교 육 기 관
노동부장관	전기기기기능사 1급 주조기능사 1급 정보처리기능사 1급 전자기기기능사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전기기사협회(전기기기기능사 1급 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교육대상자) • 한국전기통신공사협회(전자기기기능사 1급 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보수교육대상자)
	배관기능사 1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용접기능사 1급 전기용접기능사 2급 가스용접기능사 2급 특수용접기능사 2급 판금기능사 1급 일반판금기능사 2급 타출판금기능사 2급 진자기기기능사 2급 전자계산기기능사 2급 전기기기기능사 2급 선반기능사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훈련협회 • 대한전기기사협회(전기기기기능사 2급 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교육대상자)
건설교통부장관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 1급 토목기사 2급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기사 1급 건축기사 2급 건축설비기사 1급 건축설비기사 2급 의장기사 1급 의장기사 2급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사 1급 건설기계기사 2급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1급 조경기사 2급 도시계획기술사 도시계획기사 1급 건설재료시험기사 1급 건설재료시험기사 2급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교육원 • 대한전기기사협회(토목기사 1급 및 토목기사 2급 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교육대상자) • 한국전기통신공사협회(토목기사 1급 및 토목기사 2급 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보수교육대상자)

에너지 바로쓰면 경제성장 환경보전